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7 선고 2020나3780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7 선고 2020나37804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4 선고 2019가단5175216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

담당변호사 정재엽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창준

변론종결 2021. 9. 15.

판결선고 2021. 11. 17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4. 선고 2019가단5175216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피고와 C 사이에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. 4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6,055,555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6,055,5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강재철, 판사 문현정, 판사 강지현